무 배 당　비 흡 연 자 할 인 특 약　약 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 사항 ◈ 5
◈ 주요내용 요약서 ◈ 6
◈ 보험용어 해설 ◈ 8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 약관 9
제1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9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9
제3조【할인보험료의 적용】 9
제4조【흡연상태 변동 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9
제5조【특약의 감액】 10
제6조【해지환급금】 10
제7조【배당금】 10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10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의한 특약의 해지】 10
제1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 규정의 준용】 10
흡 연 질 문 서 11

◈ 가입자 유의 사항 ◈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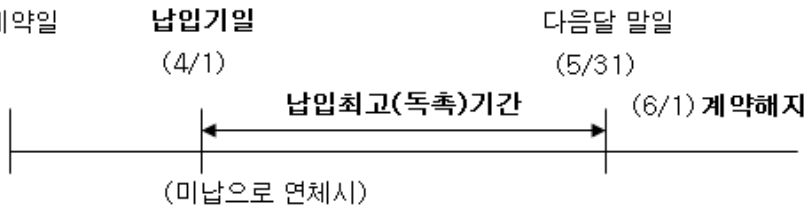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소멸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중 회사가 정한 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을 받고 회사가 승낙한 날로부터 책임을 집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을 받고 회사가 승낙하였을 경우에는 승낙한 날의 다음달 해당 보험료부터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보험 가입적격자(加入適格者)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흡연(吸煙)"이라 합니다)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비흡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조【할인보험료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비흡연 할인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흡연상태 변동 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할인된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할인전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은 해지 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할인된 보험료의 할인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용대상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흡연질문서(별지1 참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비흡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감액】
①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 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에 의한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② 감액으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이 특약의 최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해지 되며 감액일 이후 납입해당 분부터 할인전 주계약의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제6조【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배당금】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흡연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의한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적은 이 특약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할인된 보험료의 할인 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용대상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는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지1)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코리아

흡 연 질 문 서

성 명 _____ 생년월일 년 월 일

1. 귀하는 최근 12개월 내에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2. 이전에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담배를 끊기 전에 1일 보통 몇 개비를 피웠습니까?

1일 평균 : 개

3. 귀하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담배를 사용하거나 또는 최근 12개월 내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예"이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4. 귀하는 의사로부터 담배를 끊으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_____ 아니오 : _____

"예"이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_____

_____

본인은 위에서 알린 내용이 사실이고 빠짐없이 기재된 것이며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코리아에 대한 보험가입청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흡연에 관하여 알린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진술인 경우에는 비흡연자할인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납입 보험료 및 정산차액을 납입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 약 자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